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 확인(안 제10조 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이 개인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대형의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을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0톤 이하인”으로, “5톤 미만이어야”를 “10톤 이하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톤 이상이 되는”을 “10톤을 초과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톤 이상인”을 “10톤 초과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할협회는 규칙 제9조 제4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관할지역 이전 또는 차량의 양도·양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대폐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에 관한 특례)①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를 허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6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0톤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③ (생략)

제10조(대폐차 절차) ① ~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폐차 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할협회는 규칙 제9조제4항,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관할지역 이전 또는 차량의 양도·양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대폐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